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83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함.

라.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추경개요

- 추경예산 : 416,000천원
 - 총 출연금액 : 11,848,807천원(기존 11,432,807천원)
- 편성내용 : 다시가는 캠퍼스 냉난방 시설 개선 : 416,000천원
- 추경 필요성
 - 다시가는 캠퍼스(구 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는 2025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임.
 - 캠퍼스는 서남권역의 시민대상 생애주기 평생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준공(2010년) 이후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능 및 기능저하 발생, 시설 특성상 화재·폭탄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바. 다시가는 캠퍼스(구 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시설 개요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0
 - 시설규모 : 7,040㎡(강의실, 커뮤니티실, 공유오피스 등)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총 출연금액 : 11,849백만원

- 인건비 4,067백만원, 운영경비 1,906만원, 사업비 5,221백만원,
예비비 655백만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증액분(4억 1천 6백만원)을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평생교육진흥원 추경 개요〉

- 추경예산 : 416,000천원 증액
 - ▶ 총 출연금액 : 11,848,807천원 (2025년 당초 11,432,807천원)
- 편성내용 : 다시가는 캠퍼스(구 관악북평평생교육센터) 냉난방 시설 개선(416,000천원)
 - ▶ 건물 준공(2010년) 이후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능 및 기능 저하 발생
 - ▶ 혹서기·혹한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본부 12팀 1센터, 총 87명(일반직 69명, 기능직 18명)으로 구성(2025년 1월말 기준)하여, 총 124억 6천 8백만원(출연금 114억 3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8천 2백만원, 사업외수입 1억 5천만원 등)의 예산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설립등기일 : 2015. 3. 12.
 - 명 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 2~4층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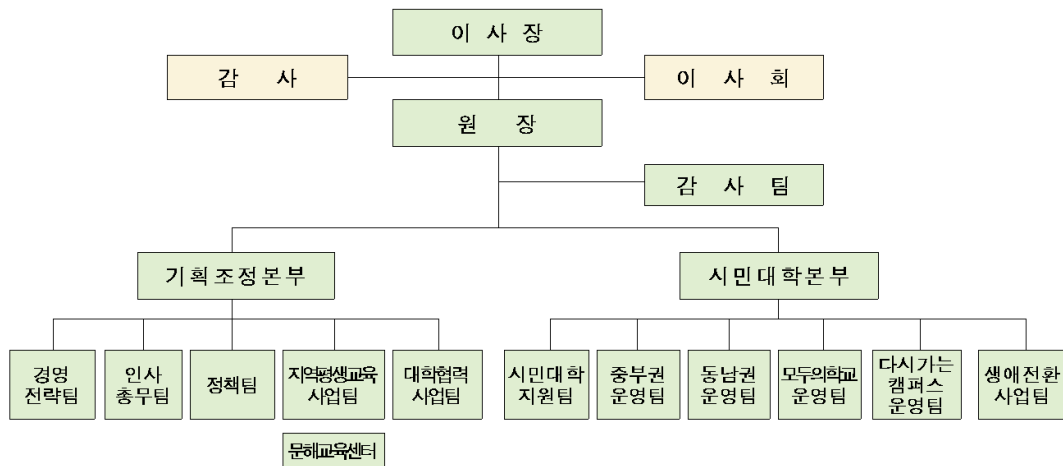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연혁 〉

- '14.04.03.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 '14.10.30. : 법인설립 준비위 창립총회
- '15.03.12. : 재단설립등기 및 이사·감사 임명(김영철 원장 취임)
- '17.10.28. : 모두의학교 개관
- '17.12.27. : 조직개편(1국 4팀 → 2국 6팀)
- '18.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운영('20년 고유사업 전환)
- '19.07.05. : 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 '20.03.10. : 조직개편(2국 6팀 → 2국 8팀 1센터)
- '20.12.23. : 조직개편(2국 8팀 1센터 → 2국 9팀 1센터)
- '21.04.05.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
- '22.02.28. : 조직개편(정책팀 신설, 경영전략팀/인사총무팀 분리, 팀명칭 변경)
- '24.02.29. : 조직개편(2국 9팀 1센터 → 2본부 10팀 1센터)
- '24.09.30. : 제3대 한용진 원장 취임
- '25.01.01. : 조직개편(2국 10팀 1센터 → 2본부 12팀 1센터)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25.1월말 기준) 〉

- 조직 현황: 2본부 12팀 1센터



- 인력 현황 : 현원 84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정 원	87	69	1	2	12	22	32	18
현 원	84	68	1	2	10	19	36	16
과부족	△3	△1	-	-	△2	△3	4	△2

※ 정원 외 인력 : 육아휴직대체인력(1명)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1차 추경(안)(B)	증감(B-A)
합 계	11,432,807	11,848,807	416,000
고유사업비 소계	4,804,715	5,220,715	416,000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675,110	675,110	-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383,100	383,100	-
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223,041	223,041	-
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618,135	618,135	-
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587,103	587,103	-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394,321	394,321	-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635,651	635,651	-
8.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1,288,254	1,704,254	416,000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47,900	147,900	-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326,780	326,780	-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6,500	6,500	-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93,000	93,000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714,074	1,130,074	416,000
일반관리비 소계	5,973,041	5,973,041	-
예비비(보급예비비) 소계	655,051	655,051	-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 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 구현 등을 출연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 특히 평생교육시설(다시가는 캠퍼스)의 냉난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시가는 캠퍼스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건물 준공(2010년) 이후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능, 기능 저하 발생 및 혹서기·혹한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시설 개선 추진
- 예산규모 : 416,000천원
- 세부 추진내용
 - 정비대상 : 다시가는 캠퍼스 본관동 냉난방기 (실내기 103대, 실외기 17대)

구 분	정비대상	합계
실내기	지하층 25대, 1층 25대, 2층 26대, 3층 31대,	103대
실외기	옥상 17대	17대

- 정비사유 : 교체대상 실내기 103대는 2009년~2010년, 실외기 17대는 2010년 물품으로 내용연수(9년)를 초과하여 운영함에 따라 잦은 고장과 열효율 저하 발생

○ 산출내역(견적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가 기준

- 장비대 : 284,342천원 = 실내기(103대) 205,980천원 + 실외기(17대) 78,362천원
- 설치비 : 130,904천원 = 실내기, 실외기 설치 및 시운전, 장비사용료 포함
- 합 계 : 415,246천원

〈실내기 및 실외기 견적〉

구분	규격	나라장터식별번호	조달가	단위	수량	재 료 비	
						단가	금액
1. 장비대							
1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2.3 / 난방2.6kW / R-W023PC2S	23238035	440,000	대	3	440,000	1,320,000
2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5.2 / 난방5.9kW / R-W052QG2S	23238031	572,000	대	2	572,000	1,144,000
4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6 / 난방6.8kW / RNW060PA2U	24312062	722,000	대	3	722,000	2,166,000
4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8.3 / 난방9.3kW / RNW083PA2U	24312064	730,000	대	14	730,000	10,220,000
4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10 / 난방11.2kW / RNW100PA2U	24312065	774,000	대	45	774,000	34,830,000
4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11 / 난방12.4kW / RNW110PA2U	24312066	802,000	대	29	802,000	23,258,000
4방향 천장형 실내기	냉방14.5 / 난방16.3kW / RNW145PA2U	24312068	880,000	대	2	880,000	1,760,000
천장 매립덕트형 실내기	냉방11.0 / 난방12.4kW / RNW110QB2S	23720419	696,000	대	3	696,000	2,088,000
천장 매립덕트형 실내기	냉방14.5 / 난방16.3kW / RNW145QB2S	23720416	788,000	대	2	788,000	1,576,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40.6 / 난방45.7kW / RPUW14FX9V	23461986	8,627,000	대	1	8,627,000	8,627,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46.4 / 난방52.2kW / RPUW16FX9V	23461987	9,741,000	대	4	9,741,000	38,964,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52.2 / 난방56.7kW / RPUW18FX9V	23461988	10,386,000	대	2	10,386,000	20,772,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57 / 난방63kW / RPUW20FX9V	23461989	11,132,000	대	4	11,132,000	44,528,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64 / 난방72kW / RP-W22FX9V	23472441	11,875,000	대	1	11,875,000	11,875,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69.6 / 난방78.4kW / RP-W24FX9V	23472442	13,490,000	대	1	13,490,000	13,490,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81.2 / 난방91.4kW / RP-W28FX9V	23470063	16,482,000	대	3	16,482,000	49,446,000
멀티V 냉난방 겸용 실외기	냉방91.8 / 난방102.2kW / RP-W32FX9V	23470065	18,278,000	대	1	18,278,000	18,278,000
[소 계]							284,342,000

<설치비 견적>

[소 계]							284,342,000
2. 설치비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21567236	708,840	식	103	708,840	73,010,52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10061680	6,800	m	205	6,800	1,394,00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10061682	8,110	m	205	8,110	1,662,55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10061684	9,970	m	51	9,970	508,47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20918014	13,220	m	51	13,220	674,22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38.1mm, 커버없음, 1m	20918016	16,440	m	1786	16,440	29,361,84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20373322	6,480	m	200	6,480	1,296,00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22723642	7,270	m	250	7,270	1,817,50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롬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10061686	7,320	m	1000	7,320	7,320,000
냉난방공조공사 공통업선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21624130	752,700	대	3	752,700	2,258,100
전기히트펌프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20912098	116,400	조	19	116,400	2,211,600
히트펌프용실내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엘지전자, PREMTB1P1, (부품)롬컨트롤러	25079820	77,000	대	103	77,000	7,931,000
히트펌프용실내기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엘지전자, PACP5A000, 제어동합컨트롤러	23310771	1,457,700	개	1	1,457,700	1,457,700
[소 계]							130,903,500
[합 계]							415,245,500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작성

-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사업 대상은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본관동) 냉난방기(실내기 103대, 실외기 17대) 시설로,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비 등 416,000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현재 교체 대상 냉난방기 물품들은 내용 연수(9년)를 초과하여 잦은 고장과 노후화(열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냉난방기 교체 규모와 산출 근거(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비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을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있는바, 시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추경

예산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바, 법령을 준수하는 절차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당초 사전의결 받았던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인 ‘다시가는 캠퍼스 운영’의 세부 사업 중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출연기관의 예산(출연금)이 확정된 이후 출연기관의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된다고 해석(별첨)하고 있는바,
- 본 동의안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종료(2024.12.31.)하고,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2025.1.17.) 하였음.

- 다만, 캠퍼스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평생교육진흥원은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료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사용 허가 및 의회로부터 사용료 감면 동의도 득하지 않은 출연기관에 공유재산의 개선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최 현 중
---------	-------	-----------	-------

별첨1. 법령해석 의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06호, 2019.1.30.)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안건(18-0618) 관련 의견 추가 회신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9(2019.1.25.)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토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출자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별첨2. 법령해석 의견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호, 2019.1.3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제처



수신 서울특별시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18-0618)에 대한 검토처리(협의) 결과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법령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귀 기관과 동일한 의견임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공문 참고)

4. 따라서 귀 기관의 법령해석 요청사항은 협의 처리되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안건(18-0618) 관련 의견 추가 회신. 끝.

별첨3. 공문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2935호, 2019.3.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이슈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자·출연 사전동의안 제출 안내

1.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호(2019.01.3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출자·출연동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출자·출연금을 추가 편성할 시 별도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실·본부·국(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결과(요약)

-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 고유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붙임 1.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1부,
2.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관과01-162, 서구1-26, 서울시출연기관, 서사01-41